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1-11
----------	-------

발의년월일 : 2011. 2. 21.

발의자 : 이필례 의원의 9인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임에 관한 사항,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 (안 제5조)
 -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 2)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 아동
 - 3) 지역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 4)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 다. 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업 범위 및 사업비 지원과 환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
- 라. 센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함. (안 제9조)
- 마.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안 제10조~제15조)

3. 제정근거

- 가. 「아동복지법」 (법률 제10191호, 2010. 9.27 시행) 제4조, 제16조, 제19조
- 나. 「아동복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시행) 제13조
- 다.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호 2010. 9. 1 시행) 제0조, 제1조

4. 조 례 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필요 (소관부서와 협의완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나. 관계법령 : 따로붙임
- 다. 예산조치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아동센터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2.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 아동
3. 지역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2.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3.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4.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활동
5.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함양 프로그램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비
2. 아동 교재·교구비

3. 운영비
4. 아동 급식비
5. 종사자 인건비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제3장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주민생활국장, 교육지원과장 및 가정복지과장
2. 위촉직
 - 가.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 나. 센터의 장

다.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라. 그 밖에 아동의 복지·교육·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5. 센터의 급식에 관한 사항
6. 센터 미지원 시설에 대한 긴급지원
7.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4조(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금품·향응 수수 및 성범죄 등에 연루된 때
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마포”

마포구



Digital Mapo

수신자 마포구의회의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회시

1. 마포구의회-831호(2011.02.23)와 관련입니다.

2.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과 관련 의견조회”와 관련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시합니다.

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1부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부 끝.

마포구



아동청소년팀장 **김병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부구청장 **02/24 김영호**

협조자 법무팀장 **김영미** 예산팀장 **이문희** 대외협력노무팀장 **조충연**

시행 가정복지과-6098 (2011.02.24.) 접수 마포구의회-875 (2011.02.24.)

우 121-7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370)

///

전화 02-3153-8931 /전송 02-3153-8949

/ weon04@mapo.go.kr

/ 공개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조례안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의원	이필레 의원 외 9인
소관부서	가정복지과
상임위원회명 및 상정예정일	복지도시위원회
사전보고 단계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지원목적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자 범위 ○ 지역아동센터 사업범위 및 사업비 등의 지원과 환수 등에 관한 사항 ○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검토의견	지역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해 조례 제정에 동의함
현재 예산지원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시비로 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아동수에 따라 월 430만원, 350만원, 200만원 지원 ○ 구 예산으로 사업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2,160만원 편성

관 계 법 령

아동복지법

[시행 2010. 9.27] [법률 제10191호, 2010. 3.26, 타법개정]

제4조(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1.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③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